

## PA28) 축산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

유미선 · 양성봉

울산대학교 화학과

### 1. 서론

2005년 악취방지법과 악취조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이 마련된 이후 악취발생사업장에서의 악취조사와 이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등의 연구 및 실증사업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상당히 저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산업시설에서의 악취와는 달리 동물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시설의 경우 농가의 낙후된 돈사시설과 퇴비 및 액비제조시설 등이 돈사부지내 위치하게 됨으로써 악취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전까지는 돈사가 위치한 지역에 새로이 주거지가 형성되거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한 악취분쟁이 발생되었다면, 최근에 들어서는 20~30년 전에 형성된 시골지역에서 조차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산시설에서 발생한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악취의 확산범위, 악취 피해일수 등의 자료를 근거로 피해로 인한 배상금액 산정액 산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.

### 2. 악취농도 측정 및 악취배출량 산정

2018년 8월과 9월 축산시설을 방문하여 돈사, 액비저장조, 퇴비사 등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되는 장소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3점 비교식 봉지법에 의해 희석배수를 산정하였다. 산정된 희석배수와 돈사의 배기팬의 용량 등의 자료로부터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축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원에서의 총 악취배출량으로부터 악취피해범위와 악취피해지역으로의 풍향자료를 고려하여 악취피해 배상금액을 살펴보았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A시 축산농가 B의 개별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총악취배출량은  $7.15 \times 10^7$  OU·m<sup>3</sup>/min에 해당하였다.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정한 악취배출량에 따른 악취로의 영향범위는 100 m 이내에서 최대 예상악취세기는 3.5도 이상이며, 300 m 이내에서는 3.0도~3.5도, 1 km 이내에서는 2.5도~3.0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. 여기에 실제 악취배출시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하면 3년(1095일) 동안 적게는 30일부터 많게는 360일의 피해가 인정되며, 피해산정기준에 따른 배상금액은 적게는 1인당 250,000원~850,000원으로 계산되었다.

최근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기간이 대부분 3년이상이고, 축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대체로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악취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므로, 축산시설에서의 악취배출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.

### 4. 참고문헌

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, 2009, 배출원 밀집지역의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연구.

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, 2015, 악취 및 먼지피해에 대한 조사 및 배상기준의 타당성 연구.